

송파구청 체육문화과 귀중

제 목 : 송파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 동호회 자치운영에 대한 지원금 재분류 요청 민원

1. 근거 및 요청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1921호에 의거하여, 송파구는 구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체육단체(동호회)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자발적인 체육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송파구의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제공되는 배드민턴 강좌는 수업(교실) 형태로 취급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의 해석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동호회 자치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 통상적인 관례는 사업 취지를 왜곡하고 구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배드민턴 강좌를 동호회 자치운영으로 재분류하여, 송파구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2. 사유 및 반박

1) 배드민턴 강좌는 동호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음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배드민턴 강좌는 단순한 수업(교실)이 아닙니다. 해당 강좌는 10년 이상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동호회 활동이며, 현재 회원 20인 이상의 구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회칙과 규정을 두고 운영하며, 월별로 자발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명백히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며, 수업(교실) 형태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수업(교실)과 동호회 활동의 차이

수업(교실)은 강사가 지도하는 강습을 포함하여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형태입니다. 반면,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강사의 지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호회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강습이나 수업의 형식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수업(교실)로 처리하는 것은 동호회 활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3) 통상적인 관례에 대한 반박

① '수업(교실)'과 '동호회 활동'의 차별적 해석 문제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강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교실)이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동호회는 자율적인 회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그 목적은 교육적이지 않고, 구민들의 체육 활동을 독립적으로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업(교실)과 동호회 활동은 성격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자유배드민턴을 수업으로 분류한 것은 활동의 실질적 성격을 무시한 잘못된 분류입니다. 수업(교실)은 강사의 전문 지도에 의한 교육적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는 반면, 자유배드민턴은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 활동으로, 교습이 아닌 자율적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업(교실)로 분류하여 지원금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본래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② 통상적인 관례는 법적 해석과 충돌 가능

행정에서 통상적인 관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해석에 있어 통상적인 관례가 반드시 옳은 해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송파구 체육단체 사용료 지원사업의 목적은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유배드민턴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활동으로, 수업(교실)과는 다른 본질을 지닌 활동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관례를 이유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한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성 원칙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행정법적 근거에 의한 반박

① 행정의 합법성 원칙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합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그 목적과 내용이 법적 규범에 맞아야 합니다. 송파구가 시행하는 체육단체 사용료 지원 사업은 동호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지원이 구민들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자유배드민턴 강좌를 수업(교실)로 잘못 분류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처분이며, 행정법상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따졌을 때, 동호회 활동을 수업(교실)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법상 위법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의 평등원칙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송파구 내의 다른 체육시설에서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의 자유배드민턴을 수업(교실)로 잘못 분류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이는 동호회 활동의 평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과거에 특정한 처분을 내리거나 안내를 한 경우, 그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뒤집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의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오랫동안 동호회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구민들은 이를 동호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참여해왔습니다. 따라서 수업(교실)로 잘못 분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입니다.

4. 세부 사항

1) 자유배드민턴 동호회 운영 방식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운영해 온 동호회 활동입니다. 매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강사의 지도 없이 자유롭게 배드민턴을 즐기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강좌는 수업(교실) 형식의 강습이 아닌, 동호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체육 활동입니다.

2) 다른 강좌와의 비교

다른 강좌는 주로 게임 운영 지도와 강습을 포함한 수업(교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강사의 지도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강습과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른 강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활동입니다.

3) 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

송파구청에서 배드민턴 강좌를 수업(교실)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매년 약 5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동호회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동호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 사용료는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사례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배드민턴 종목에 특화된 체육시설로, 이곳에서도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의 자유배드민턴 강좌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 결론 및 요청 사항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수업(교실)이 아닌 동호회 활동입니다. 동호회 활동은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시설 사용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체육단체(동호회) 사용료 지원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며, 수업(교실)로 잘못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호회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자유배드민턴 강좌는 동호회 활동으로 재분류하여, 정당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동주]

연락처: [010-7148-1409]

날 짜: [2025년 1월 7일]